

#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 미 국

### 미국법무부, 2000년 컴퓨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증권업계의 정보교환 계획을 승인

주요 민간부문의 2000년 컴퓨터 문제(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하고 그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법무부는 지난 '98년 7월 1일 증권업협회(Securities Industry Association (SIA)) 회원에게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동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정보교환을 수행하도록 하는 협회의 계획을 승인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상기 민간사업자의 정보교환계획에 대한 경쟁상의 문제점 검토를 요구받고 당해계획이 경쟁을 직접 감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가격 및 고객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 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정보교환이 증권업협회 회원 상호간의 경쟁을 감소시키기보다 2000년 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키고 동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경쟁촉진의 효과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약 800여개 회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동 협회의 회원은 법안금융 및 공공용과 관계되는 모든 시장이나 분야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투자은행, 브로커, 딜러 및 투자신탁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동 협회의 회원은 5천만명 이상의 투자자의 구좌를 직접 관리하고 수천만 명의 투자자의 구좌를 법인, 저축 및 연금계획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0년 컴퓨터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증권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많은 컴퓨터 내의 정보시스템이 파손되고 만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유사한 염려는 다른 업계나 일부의 정부활동에서도 있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업계에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잠재적인 2000년 이행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0년 전환에 관련된 평의회(Council on the conversion)」를 설치토록 하였다.

증권업협회 및 그 회원은 특정판매업자의 제품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되도록 추천하거나 장려하는 일은 없

다. 정보교환이 반경쟁적인 결과로 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교환된 정보는 주관적 판단을 피한 형태로 변형된다. 증권업협회의 회원은 개별적으로 각각 정보의 사용방법과 정보의 사용여부까지 결정한다.

크라인 반트러스트국장은 「법무부는 증권업협회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정보나 언질 및 정보교환의 성질에 의하면, 동 계획에는 경쟁상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동 협회의 주문서(Request letter)에 한정된 범위 내의 정보교환은 증권협회의 회원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 어떠한 가격이나 고객정보도 명시하지 않고 컴퓨터 서비스의 조달과 관련한 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행위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판매업자의 관한 정보교환은 객관적으로 행해지며,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되며, 장려함도 없고, 공동의 조달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공동보이콧도 행해지지 않는다. 증권업협회의 회원 각자는 문제해결업무 때문에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하였다.

크라인 국장은 또한 상기 정보교환 계획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칩의 판매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한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크라인 국장은 「교환된 판매업자간의 정보의 종류에 가격이나 고객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마 일부의 정보는 판매업자의 경쟁에 전략상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비밀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분명히 외부에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쉽게 취급하는 데 불과하다. 어쨌든 계획되어 있는 정보의 교환은 판매사업자간의 기술혁신이나 가격경쟁은 제한하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크라인 국장은 동 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보교환계획은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권업협회의 두 가지 주장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신빙성이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협력 계획은 증권거래 시스템의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 계획 중 협력은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신속히 하게 한다. 어느 쪽의 이익이든 간에 이것은 투자자의 이익이 되어 되돌아오며, 이러한 이유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쟁촉진적인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98. 7. 1, 법무부 발표

**Eastman Chemical사,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유죄 인정**

Eastman Chemical사는 식품용 방부제 산업에서의 국제적 가격고정 담합에 참여한 데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1,1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미국 법무부가 9월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당해 유죄 인정 합의서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화학방부제로서 전세계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2억달러인 소르빈산염(sorbate) 가격 고정에 관한 조사결과 제기된 첫 번째 반트러스트 기소된 것이다. 법무부는 Eastman Chemical사가 계속되는 조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Eastman Chemical사가 1995년 1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소르빈산염 제조업체들과 함께 경쟁을 제거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Eastman Chemical사의 대표가 다른 담합업체들과 함께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소르빈산염의 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르빈산염 산업에서의 반트러스트 위반에 대한 우리의 계속되는 조사 중 단지 첫 번째에 불과하며 국제 시장에 대한 반트러스트국의 조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의 Gary Spratling은 말하였다.

Eastman Chemical사는 당해 조사의 진전을 위해 “귀중한 협력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그는 성명에서 밝혔다.

■ '98. 10. 1, The New York Times

**미국 법무부, 비자사 및  
마스터카드사를 상대로  
반트러스트 제소**

미국 정부는 10월 7일 미국의 양대 신용카드 네트워크인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가 경쟁 및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기하였다.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된 당해 소송에서 법무부는 일련의 은행들이 두 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업체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과 아울러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가 채택하고 있는 바 회원사인 은행들에 대하여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및 디스커버카드와 같은 경쟁 신용카드의 발급을 금지하는 규칙을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인 규칙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미국 소비자는 손해를 본 것이다.”라고 법무장관 재닛 리노는 언급하였다.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의 임원들은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당해 소송에서 다룰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신용카드 산업은 미국 내에서 가장 경쟁적인 산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는 문제를 자초하는 해결책이며, 소비자들은 신용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무한한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반트러스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다. 내가 보기에는 소비자의 선택이 감소

된 것 같지 않다.”라고 비자사의 수석부사장이자 법률고문인 Paul Allen 은 말하였다.

반면 경쟁업체들은 당해 소송의 제기 사실에 고무되었다.

디스커버카드를 발급하는 기업인 모건 스탠리 딘 위터사의 회장이자 최고임원인 Philip Purcell은 “무척 흥분되는 일이다. 법무부는 당해 산업에서의 경쟁을 매우 심도깊게 연구하였다. 당해 소송의 제기는 상당한 끈기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언급하였다.

당해 소송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사의 이익제기에 뒤이어 신용카드 산업에 대한 2년간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제기된 것이다. 10월 7일의 성명에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사는 당해 소송이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가 수년간 신용카드 산업에서 유지하였던 위법한 제약을 봉괴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보이다”라고 하였다.

당해 소송은 의회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마스터카드사와 비자사의 관행은 뻔뻔스럽고 반경쟁적인 것이다. 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델라웨어-뉴저지주 상원의원인 Robert Torricelli 는 말하였다.

캘리포니아주 Oxnard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용카드산업 소식지인 Nilson Report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가 매출의 18%를 차지하였으며 디스커버카드가 6%, 다이너

스카드 매출은 전체 중 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Nilson Report 사장인 David Robertson은 이러한 수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는 법무부가 승소한다고 하여도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하였다.

“문제되는 경쟁은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간의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들간의 경쟁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에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것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지금이 카드 소지자들에게는 환상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는 연회비가 없다. 또한 소비자들은 사용한도액이 매우 높은 카드를 제공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승소한다면 소비자에 대한 순효과는 부정적일 것이며, 이는 만일 은행들이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를 다량 발급할 수 있게 될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므로,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를 받는 상점의 수는 최근 감소하여 왔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가 적용하는 할인율 하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반소비자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판매자들은 제공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Sanford C. Bernstein & Co.의 분석가인 Moshe Orenbuch는 말하였다.

Hughes, Hubbard & Reed 법률회사에서 금융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인 Anita Boomstein은 정부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나는 반드시 법무부의 결론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현 구조가 경쟁을 제약하였는지를 법무부가 과연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녀는 말하였다.

■ '98. 10. 8, The New York Times

### 미 FTC, Toys 'R' US사에 대하여 반경쟁적 관행 중지 요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월 14일, 미국 최대의 완구 소매업체인 Toys 'R' US사가 제조업체들과 공모하여 경쟁 소매업체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완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왔다는 행정법 판사의 1997년 결정을 전원일치로 지지하였다.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가 작성한 동 위원회의 의견에서는 Toys 'R' US사가 “완구 유통업체로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완구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이 다른 완구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과 동일한 완구를 창고형 매장에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FTC는 동 회사에 대하여 위법한 관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Toys 'R' US사의 대변인인 Rebecca Caruso는 "우리는 이번 결정에 실망하였지만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FTC가 동 위원회 소속의 행정법 판사인 James Timony의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다" 라고 하였다. Caruso는 동 회사가 당해 결정에 대하여 즉각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 Paramus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650여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Toys 'R' US사는 미국 완구사업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 회사는 또한 외국에서 30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Toys 'R' US사가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Price/Costco, 그리고 월마트의 Sam's Club과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과의 경쟁을 제거하려 한다는 이유에서 1996년에 동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동 제소에서는 또한 Toys 'R' US사가 완구 제조업체들에 압력을 넣어 유명 모델을 경쟁 소매업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비난도 제기되었다.

정부가 인용한 실례에 따르면 Hasbro Inc.는 Hall of Fame GI Joe 인형을 창고형 매장에 직접 판매하기를 거절하였으며 Mattel Inc.는 Fisher Price 당구대 판매를 거절하였다.

■ '98. 10. 15, The New York Time

### Primestar사, 반트리스트 제소 우리로 방송위성 취득계획 포기

Primestar Inc.는 루퍼트 머독의 News Corp.와 MCI Communications Corp.간의 합작투자사업인 American Sky Broadcasting사로부터 방송위성을 11억 달러로 취득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미국 위성텔레비전 시장 진출이라는 야심에 찬 머독의 계획에는 타격이 된다.

소식통들은 News Corp.가 당해 위성들을 지배적 위성방송회사인 DirecTV사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 회사는 Hughes Electronics사가 소유하고 있다. DirecTV사로부터는 논쟁을 얻을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Primestar사의 궤도위성 취득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계획이 유선방송 산업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Time Warner사, MediaOne사, Comcast사 및 Cox Communications사를 포함하는 주요 유선방송회사들이 Primestar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는 머독에게는 Primestar사 설립시 당해 계획의 일부로서 동 회사에 대한 30%의 의결권 없는 주식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었다.

법무부의 Joel I. Klein 국장은 Primestar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소비자들을 위한 대승리"라고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낮은 가격,

혁신의 증대 및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고 Klein 국장은 성명을 통하여 밝혔다. "직접방송 위성 서비스는 지역 유선방송 독점업체들에 대한 최초의 의미 있는 경쟁자이다. 이번 조치의 결과로 남아 있는 직접방송위성 궤도가 지배적 유선방송회사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미국 제2위의 직접방송위성 서비스 제공업체인 Primestar사의 자금부담담당인 Ken Carroll은 "법무부가 강경하게 우리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점과 당해 사업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수를 고려할 때,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란 어려웠다."고 언급하였다.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arroll은 동 회사는 기존의 220만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Primestar사의 주주인 유선방송회사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머독과 또다른 합작업체인 United Video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 되었었으나 주식시장의 동요로 인해 자금조달이 복잡해진 관계로 당해 합의가 파기되었다.

직접방송위성 서비스는 영상 프로그램을 시청자의 가정 내지 사무실에 설치된 접시형 수신안테나로 전송하기 위해 궤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을 이용한다.

DirecTV사와 EchoStar Communications Corp.는 최상의 궤도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18인치짜리 소규모 접시형 안테나의 판매가 가능한 반면, Primestar사의 방송수신은 그다

지 유리하지 않은 궤도로 인해 36인 치짜리 접시형 안테나를 필요로 하며 채널 수도 적은 관계로 시청자의 증가가 억제되어 왔다. 분석가들은 보다 나은 위성궤도가 없다면 Primestar사는 다른 위성방송업체들과의 경쟁이 힘들 것이라고 하고 있다.

ASkyB사가 현재 보유중인 위성궤도에 대한 최초의 경매에서, 주요 위성방송업체인 DirecTV사는 동 회사가 당해 시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우려한 규제당국에 의해 경매에서 배제되었다. 작년에 News Corp.가 EchoStar사와의 자산매각 합의를 파기하자 머독은 Primestar사와의 계약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며, EchoStar사는 이에 대하여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비록 당해 방송위성 자산에 대한 낙찰자가 있게 되더라도 머독과 MCI사가 입을 투자손실은 막 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98. 10. 15. Los Angeles Times

**미 법무부, 노스웨스트 항공의 컨티넨탈 항공 지분 취득 제소**

법무부는 10월 23일 노스웨스트 항공에 의한 컨티넨탈 항공의 지배적 지분 매입이 항공사간의 경쟁을 제약하고 수백만 미국인들에게는 항공요금의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

가 20년 전 철폐된 이후 2개의 주요 항공사간의 기업결합을 정부가 저지하고자 나선 최초의 사건이다. 이는 반트러스트 집행을 강화하여 온 클린턴 정부가 더이상의 항공산업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항공산업은 최근 몇 년간 수 개의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왔다.

“소비자들에게 있어 쾌적한 최상의 항공운송은 개인적 삶 및 사업 모두에서 중요하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Klein은 언급하였다. “이번 취득은 이들 두 항공사가 지배하고 있는 노선을 이용하는 400만 승객들에 대한 항공운임의 인상 및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 제소내용의 핵심은 노스웨스트사에 의한 컨티넨탈사의 지배가 이들 두 항공사간의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특히 대형 중추공항을 잇는 7개 노선에서 그러하리라는 것이다. 미국 4위의 항공사인 노스웨스트사는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및 멤피스 지역의 항공교통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5위의 항공사인 컨티넨탈사는 현재 뉴욕 중추공항에서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 지역에서 가장 큰 항공사이다. 동 회사는 또한 휴스턴과 클리블랜드 공항의 항공편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얼마나 효과적일 지는 명백하지 않다. 디트로이트 주재 지방법원에 제기된 당해 소송은 노스웨스트사와 컨티넨탈사간의 거래를 저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원에 대하여 동 소송의 계속중에

두 항공사가 당해 거래를 완성하는 것을 중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소장은 또한 이들 두 항공사가 별도의 경영진, 근로자 및 항공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공동 마케팅을 가능하게 할 이들 두 항공사간의 제휴 협정에 대하여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컨티넨탈사는 당해 협정을 “실질적인 기업결합”으로 표현하여 왔다.

당해 지분 투자 및 제휴 협정 모두가 친경쟁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스웨스트사는 10월 23일 동 회사는 정부와 법원에서 다들 준비를 하면서 “수일 내는 아니지만 주주일 내로” 컨티넨탈사의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패소할 경우 노스웨스트사는 컨티넨탈사의 지분을 매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소송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컨티넨탈사의 법률고문인 Jeffrey Smisek은 언급하였다.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정부가 두 항공사의 거래를 중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 측 법률가들은 법무부가 법원으로부터 비교적 빨리, 아마도 1년 내에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이들간의 제휴 협정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소송이 과거 IBM 사건처럼

수년에 걸친 소송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반트러스트국 부국장인 John Nannes는 10월 23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기업결합 사건들은 매우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다."

그는 노스웨스트사와 컨티넨탈사가 쉽게 반복할 수 없는 변경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잠정 중지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항공산업에 광범한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스웨스트사와 컨티넨탈사가 1월에 제휴를 발표하 이후 미국의 다른 주요 항공사들은 노스웨스트사와 컨티넨탈사가 결합한 후 더욱 반대해진 노선망이 자신들의 고객을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따라잡고자 서둘렀다.

그 후 수주일 내에 미국 최대의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미국 내 노선망을 미국 3위의 항공사인 델타 항공과 연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 2위의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미국 6위의 US Airways와 제휴하였다.

비록 이러한 협정들 중 어느 것도 주식 교환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항공권 가격의 인상과 항공산업의 경쟁 감소를 점차 우려하게 된 워싱턴의 의원들이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지난 달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은 델타 항공 소속 조종사들의 반대로 국내선 공동 마케팅 계획을 포기하여야 했다. 그러나 항공사 임원들은 노스웨스트-컨티넨탈간 제휴

가 인가된다면 다른 제휴 건도 이와 유사한 인가를 추구할 것이라고 사석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건이 인가되면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기타 등의 건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이다"라고 카터 행정부 당시 민간항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항공산업 규제완화를 주재하였으며 현재 코넬대학 석좌교수로 있는 Alfred Kahn은 언급하였다. "아마 저지는 가능하겠지만 꽤 힘들 것이다."

노스웨스트사와 컨티넨탈사는 10월 23일 자신들의 제휴는 1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소비자 이익을 낳을 것이며 반면 양 항공사의 독립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결합이 성사될 경우 그 결과 이들은 미국 내 항공교통의 16%를 차지하며, 당해 시장에서 각각 17% 내지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및 델타 항공에 맞서는 4위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월, 노스웨스트사는 컨티넨탈사 지분 14% 매입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금융가인 David Bonderman이 지배하고 있는 텍사스 주재 투자전문 그룹인 Air Partners로부터 현금 3억 1,100만달러 및 410만주의 노스웨스트사 주식과 교환으로 컨티넨탈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1%를 취득하는 것이다.

컨티넨탈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스웨스트사는 이들 지분을 신탁할 것이라고 하였다. 컨티넨탈사 이사회에서는 독립적 이사회가 의결

권을 좌우하게 될 것이지만 노스웨스트사는 기업인수의 경우 및 컨티넨탈사의 장래를 결정하는 기타 주요 상황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가 6년 기한의 당해 신탁에 반대하자, 노스웨스트사는 신탁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의하였다. 동 회사는 또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한 제한을 감수하겠다는 것 및 컨티넨탈사의 이사회에서 노스웨스트사의 임원을 배제하겠다고도 제의하였다.

그러나 신탁기간이 만료되면 노스웨스트사는 과반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요구의 철회를 법무부가 거부함으로써 인해 정부와의 교섭이 금주 초에 결렬되었다고 노스웨스트사의 법률고문인 Douglas Steenland는 밝혔다.

그는 덧붙여 노스웨스트사는 정부에 제의하였던 것과 같은 보다 자유로운 내용으로 컨티넨탈사의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10월 23일의 소송에서 언급된 현안들 중 상당수가 해결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명확히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반경쟁적인 취득은 장기간의 의결권 신탁에 의하든 기타 인위적 법적 장치에 의하든 한 경쟁자를 다른 경쟁자가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그 위법성은 치유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Klein 국장은 10월

23일 말하였다.

■ '98. 10. 24, The New York Times

**미 프로야구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적용제외 폐지**

클린턴 대통령은 10월 27일 미국 프로야구에 대해 70년간 유지되었던 반트러스트법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프로야구는 노사문제에 있어 다른 프로스포츠와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특별한 행사 없이 1998년의 Curt Flood 법안에 서명하였다. 의회는 10월 초에 이 법률안을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법은 프로야구가 주간(州間)의 교역(interstate commerce)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을 제외했던 1922년 대법원 판결의 일부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적용제외로 인해 프로야구 선수들은 다른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향유하는 법적 보호를 박탈당하였으며, 선수 노조는 이 판결이 1994-1995년 시즌의 장장 232일간에 걸친 파업을 비롯하여 1972년 이후 8번의 경기 중단의 주범이라고 비난하였다.

“반트러스트법 하에서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의 고용 문제를 이러한 문제가 다른 프로스포츠에서 다루어지는 방식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라고 클린턴 대통령은 언급하였다.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는 새로운 법률의 성립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선수들이 장래의 분쟁에서 반트러스트 소송을 하나의 선택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노조 대표인 Donald Fehr는 언급하였다. “의회 의원들은 야구팬들이 궁극적으로 이 법의 실제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이 법이 Flood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 “특히 적절하다”라고 하였는데, Flood는 1970년 10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부터 필라델피아 필리스로의 트레이드를 거부하고 자유계약선수 자격 획득을 위해 대법원에까지 상고한 선수로서, 대법원은 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Flood는 1997년 1월 후두암으로 사망하였다.

이 법률은 의회에서 3번의 회기를 거쳐 성립된 것으로서 오로지 노사관계에 대한 반트러스트 적용제외만을 반복한 것이고, 선수 지배체, 리그 확대 내지 마이너리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판례가 계속 유효하다.

■ '98. 10. 28, Los Angeles Times

**E U**

**구주위원회, 일본 우편선 등  
대서양동맹협정의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위법한  
카르텔로 규정하고 사상최고의  
재재금 부과  
- 총액 약 420억엔**

구주위원회는 지난 '98년 9월 16일 대서양동맹협정(TACA) 가맹해운업자가 로마조약 제86조(독점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되는 두 개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당해 해운업자에 대하여 총액 2억 7,300만ECU(약 420원, '98년 11월 현재 1ECU = 1,537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 발표문에 의하면 대서양동맹협정에 가입한 일본 우편선에 부과한 벌금은 2,063만ECU(약 32억 7천만원)이었다.

1994년 7월 1일에 EC 경쟁법의 적용제외신청이 제출된 대서양동맹협정 가맹 해운업자는 로마조약 제85조제1항에서 금지되어 있는 반경쟁적인 합의를 하였는데 동 내용은 ① 북구·미국간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② EU 역내에서의 육상운송에 관하여 공동운임을 결정하며, ③ 하주와의 운송계약에 관한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④ 후래트·취와도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공동 결정이다.

본건 합의내용 중 ①의 합의만은 이사회규칙 4056/86(EC 경쟁법의 해운분야에 적용되는 특칙) 제3조에서 규정한 해운동맹에 해당하여 EC 경쟁법의 일괄적용제외대상이 되지만 다른 3개의 경우는 구주위원회에서 개별적용제외를 거부한 것이다.

본건 결정에서 구주위원회는 대서양동맹협정은 공동독점의 지위에 있고, 이하 두 가지 방식과 같이 공동독점의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1995년, 하주와의 개별운송계약

의 체결을 금지하고 그후에는 크게 제약적인 조건이 아니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2) 잠재적 경쟁상대에 있는 선사에 작용하여 대서양동맹협정에 가맹시키고 동 동맹 내에서 이중운임협정에 합의하고, 전통적인 맹외선사에 관해서는 낮은 운임으로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동 허용에 의하여 독립계선사가 갖는 경쟁을 제한하였다.

로마조약 제86조에 위반한 위 두

개의 행위를 이유로 대서양동맹협정에 대하여 총액 2억 7,300만 ECU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또한 동 금액은 구주위원회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다.

대서양동맹협정에 의하면 EU 역내의 육상운송에 관한 공동운임의 설정 합의에 관해서는 구주위원회는 후에 별도로 제재금의 부과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 '98. 9. 16, 구주위원회 발표문

**유럽위원회, 2개 제당회사에 대하여 6,1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영국의 2대 설탕 제조업체와 2개 판매상에 대하여 1980년대 후반 이들이 백색 정제당 시장에서 가격을 고정하고 시장을 조작하였다고 하여 총액 5,020만 ECU(6,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British Sugar사는 당해 카르텔의 "주도자"로서의 역할과 최초의 가격 고정 회합을 선도한 사실로 인해 3,960만 ECU라는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동 회사는 당해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Tate & Lyle사에 대한 700만 ECU의 벌금은 동 회사가 유럽위원회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 결정으로 인해 상당히 감소된 것이다. 6년간의 조사 동안 당해 회사는 동 회사의 범죄관련 사실을 밝히는 2통의 서신을 제출하였다. 설탕 판매상들인 Napier Brown사와 James Budgett사는 각각 180만 ECU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동 위원회에 따르면 당해 카르텔은 1986년 6월부터 1990년 7월까지 유지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들 4개 회사는 영국 백색 정제당 시장의 90%를 지배하였다. 이 카르텔은 1986년 6월 20일 British Sugar사와 Tate & Lyle사간의 회합으로 개시되었으며, Napier Brown사와 James Budgett사는 그 해 후반에 합류하였다.

유럽위원회는 그 이후 18회의 회합

**<대서양동맹협정 회원 및 제재금액>**

선사명	국적	제재금액	
		ECU	원
Maersk	덴마크	2,750만	42억2,675만원
Sea Land	미국	2,750만	42억2,675만원
P&O Neddlloyd	연합왕국/북아일랜드	4,126만	63억4,166만원
OOCL	홍콩	2,063만	31억7,083만원
일본우편선	일본	2,063만	31억7,083만원
한진	한국	2,063만	31억7,083만원
Hapag Lloyd	독일	2,063만	31억7,083만원
현대	한국	1,856만	28억3,411만원
MSC	스위스	1,375만	21억1,338만원
DSR/Senator	독일/한국	1,375만	21억1,338만원
NOL	싱가폴	1,375만	21억1,338만원
조양	한국	1,375만	21억1,338만원
TMN/Tecomer	멕시코	688만	10억5,745만원
ACL	스웨덴	688만	10억5,745만원
POL	폴란드	688만	10억5,745만원
계		27,294만	419억5,088만원

\* 동 제재금은 P&O/Neddlloyd 합병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해진 것임  
 \* NOL 및 한진은 현재 대서양동맹협정을 탈퇴하였다.



의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이 회합에서 British Sugar사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산업용 설탕의 희망가격을 제시하였다. British Sugar사와 Tate & Lyle사 간에는 추가로 8회의 회합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들은 가격할인정책을 논의하였으며 British Sugar사는 자사의 가격설정 정책을 공개하였다.

동 위원회는 비록 가격 고정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정기 회합은 '카르텔 참가자들이 장래 가격설정 관행에 관한 의도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British Sugar사가 다른 당사자들보다 심한 처분을 받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동 회사가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가격 선도자라는 지위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동 회사가 경쟁업체들과의 가격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당해 카르텔 결성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14일 British Sugar사는 이러한 사건들은 이전 경영진 하에서, 그리고 Associated British Foods사가 1991년에 동 회사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Napier Brown사와 James Budgett사는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동 위원회는 이들 회사는 자신들이 판매상으로서 판매하는 설탕의 상당부분을 British Sugar사 및 Tate & Lyle사의 공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및 가격에 영향을 줄 능력이 제한적이었다고 하였다.

■ '98. 10. 15, Financial Times

## 일본

### 독금법 개정 움직임 - 공취위에 서류압수권한

공정취인위원회는 10월 13일, 세계적으로 운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독점금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현장조사시에 증거서류를 강제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취위의 조사권한을 확충할 방침을 굳혔다. 증거서류의 제출을 거부당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서류를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취위는 이외에 기업합병의 신고양식 등에서 국제적 기준과의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도부터 독금법의 개정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마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조사권한의 확충은 입찰·담합 등 악질적 독금법 위반행위의 적발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의 현장 조사는 실질적으로는 임의조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여 조사효율이 떨어진다는 평판이 있다. 현행제도에서도 절차를 밟으면 강제적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개정에 의해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강제력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장래에는 수사당국과 동일한 수준의 「강제권한」을 보유하게

할 계획이다.

■ '98. 10. 13, 요미우리신문